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 144호)

◦ 2000. 6. 24.

◦ 총무재무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5. 12.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0. 5. 22.
다. 상정일자 : 2000. 6. 2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00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가.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탄천 유역의 수질악화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탄천유역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소속 자치단체들의 탄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협의회의 명칭은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로 함. (안 제2조)
- (2) 기능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감시등으로 함. (안 제3조)
- (3)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회원으로 구성하되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과천시장으로 함. (안 제5조)
- (4) 회장은 매년도 첫 정기회의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안 제6조)
-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안 제7조)

- (6)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안 제9조)
- (7)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함. (안 제11조)
- (8)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안 제1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근)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 및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동협의회 규약을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규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환경영운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추진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사무소의 위치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협의회 구성은 강남, 송파, 서초구청장, 성남, 용인, 과천시장을 위원으로 하되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안 제5조)
 - 회의는 정기회, 수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개최함. (안 제9조)
 -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사무, 공동개발사업실시 필요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거 부담함. (안 제15조)

-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성실하고 신속히 이행하고 당해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함. (안 제16조)
- 본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부칙안)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행정협의회구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에 “합의회의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약안을 검토한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동법시행령,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고,
- 서울시 수질67421-854(2000. 5. 10)호로 탄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구성·운영활성화를 요청하였으며,
- 경기도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탄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은 하천 유역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약안은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6개 자치단체중 3개 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안이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답) 당초 이 규약안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 공동으로 작성한 했습니다.
강남구, 용인시, 성남시등 3개 자치단체도 동일한 안대로 통과가 되었음.

질)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동사무처리 공동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경비는 협의회 결정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지?

답) 협의회 구성만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제시된 바는 없으나 6개 자치단체에서 동 협의안이 통과되면 금년 연말까지 공동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사업비가 산출될 것이며,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임.

질) 우리구에서 시발되는 하천은 무엇인지?

답) 서초구 관할을 통과하는 하천은 탄천지류이며 동지류에는 양재천 4.37km, 여의천 3.3km, 세곡천이 2.2km임. 하천별로 보면 양재천 일부는 과천에서, 세곡천은 강남구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에서는 3개의 하천이 흘러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 음.